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46
----------	-------

발의연월일 : 2026. 4. 15.

발 의 자 : 임미애 · 김남희 · 윤준병
조계원 · 윤후덕 · 이수진
이기현 · 이연희 · 신장식
박지원 · 김영진 · 김동아
이용선 · 이광희 · 안태준
황명선 · 김 윤 · 김남근
손 솔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소송보다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인지대 등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 등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행정청이 업체의 인허가 신청을 거부하여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업체는 기각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도, 해당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각하판결을 받게 되며, 그렇다고 하여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승소하기 힘들.

이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제기하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후속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 등을 할 수 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보다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35조 후단).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심판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결이 있는 경우,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원고가 재결의 취지에 따른 행정청의 후속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행정심판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3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는 제12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소송에도 적용한다.

등의 效力 유무 또는 存在 여
부의 확인을 구할 法律上 이익
이 있는 者가 제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을 준용한다.